

이해상충 방지정책

토러스자산운용(주)는 책임있는 자산관리자로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일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투어드십 코드)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회사는 고객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고객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을 비롯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 1) 회사와 고객간
 - 2) 회사의 관계회사와 고객간
 - 3) 회사와 임직원간
 - 4) 회사의 임직원과 고객간
 - 5)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3. 회사는 수탁자 책임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점검 및 관리합니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 법규,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될 경우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최대한 낮추어 처리합니다.

5. 회사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이해상충 예방정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 1) 겸직의 금지 -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 - 회사의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 3) 임직원 이해상충 방지 교육 -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해상충을 비롯한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전문기관 활용 -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 시 외부 자문기관의 의안분석을 포함한 의견을 참고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6.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7. 회사명 변경

- 토러스투자자문(주) → 토러스자산운용(주)
- 변경일 : 2022. 04. 01